

# 원화환산지급특약

##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

제 1조 [ 목적 ]

제 2조 [ 용어의 정의 ]

## 제2관 기준통화 및 환산기준

제 3조 [ 보험계약의 기준통화 ]

제 4조 [ 환산기준일 ]

제 5조 [ 원화환산율 ]

##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

제 6조 [ 특약의 적용 ]

제 7조 [ 특약의 체결 및 효력 ]

## 제4관 보험료의 납입

제 8조 [ 특약 보험료의 납입 ]

## 제5관 기타사항

제 9조 [ 보험금 등의 반환과 관련된 사항 ]

제10조 [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]

제11조 [ 특약내용의 특별변경 및 계약자 안내 ]

# 원화환산지급특약

##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

### 제 1조 [ 목적 ]

이 특약은 보험계약자(이하 '계약자'라 합니다)와 보험회사(이하 '회사'라 합니다) 사이에 외국통화를 원화로 환산하여 지급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.

### 제 2조 [ 용어의 정의 ]

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,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.

#### 1. 계약관계 관련 용어

- 가. 계약자 :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.
- 나. 피보험자 :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.

#### 2.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

영업일: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, 토요일, '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'에 따른 공휴일, 대체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.

## 제2관 기준통화 및 환산기준

### 제 3조 [ 보험계약의 기준통화 ]

이 특약이 부가된 경우 회사가 보험금 등 주계약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사용되는 통화는 대한민국 법화(이하“원화”라 합니다)로 합니다.

### 제 4조 [ 환산기준일 ]

- ① 외국통화를 원화로 환산하는 환산율의 적용기준이 되는 날을 환산기준일(이하 “환산기준일”이라 합니다)이라 합니다.
- ② 환산기준일은 보험금 등의 지급일의 직전 영업일로 합니다.
- ③ 제2항의 환산기준일은 회사가 거래하는 주된 은행(이하 “주거래 은행”이라 합니다)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환산기준일이 주거래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주거래 은행의 그 직전 영업일로 합니다.

### 제 5조 [ 원화환산율 ]

환산기준일에 주거래 은행이 고시(최종고시환율)하는 외국통화별 대고객 전신환매입율과 최종 고시하는 매매기준을 범위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원화환산율로 합니다.



#### 용어해설

##### [ 대고객 전신환매입을 ]

송금은행이 송금 의뢰인에게 외환을 매입할 때 적용되는 환율입니다.

##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

### 제 6조 [ 특약의 적용 ]

이 특약은 외국통화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주계약에서 보험금 등을 원화로 환산하여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.

### 제 7조 [ 특약의 체결 및 효력 ]

-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계약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.
- ③ 주계약이 해지되거나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는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.



#### 용어해설

##### [ 보장개시일 ]

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,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. 또한,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.

## 제4관 보험료의 납입

### 제 8조 [ 특약 보험료의 납입 ]

이 특약의 보험료는 없습니다.

## 제5관 기타사항

### 제 9조 [ 보험금 등의 반환과 관련된 사항 ]

회사가 이 특약이 부가되는 주계약에서 원화로 환산하여 지급한 보험금 등을 취소하거나 주 계약 약관에서 정한 계약의 무효에 따라 고객이 지급받은 보험금 등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고객은 지급받은 원화와 동일한 금액을 원화로 반환하여야 합니다.

**제10조 [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]**

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.

**제11조 [ 특약내용의 특별변경 및 계약자 안내 ]**

금융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급격한 환율 변동이 발생할 경우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이 특약의 원화환산지급서비스가 일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.